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공고 제2010-1833호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산시주요업무자체평가규칙」에서 적용하는 상위법인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편안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목적)

- ▶ 「정부업무등의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관련 조항 정비

나. 안 제3조(자체평가계획 시달)

- ▶ 각 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
 1. 군산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시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자체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4.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다. 안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 ▶ 제1항 단서조항 삽입 : “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2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정비

3. 의견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전화 : 450-6106, FAX : 450-4333,
 전자우편 : lerele14@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심사평가계 (전화 450-61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군산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이를 추진하는 관·과·소의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시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당해년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외부평가"란 주요업무중 시장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시민만족도 조사"란 시장이 평가대상 관·과·소에 대한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역량, 업무추진 등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등을 자체조사 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자체평가

제3조(자체 평가계획 시달)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1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관·과·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 임무, 전략 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시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자체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4.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관·과·소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요업무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5조(정기평가) ① 각 관·과·소장은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관·과·소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관·과·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심사의 실시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각 관·과·소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시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정기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표 및 가중치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감사담당관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관·과·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시평가) 시장은 정기평가 분기에 속하지 아니한 분기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외부평가) 시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민만족도 조사) 시장은 평가대상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관·과·소의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① 각 관·과·소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시정방안과 제5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자체평가위원회 등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산시자

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선정,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위원회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장급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사평가계장이 된다.⑤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자료제출) ①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과·소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관·과·소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10 -1842호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기간 주민의견 반영 등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 입법예고합니다.

2010. 12. 1

군 산 시 장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가. 개정(안) 제4조 지원대상에 대한 의견반영으로 제2조 정의 변경

- 입법예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함은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제1호에 의한 급식 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나.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 의견 반영 (조례 안 제4조)

○ 입법예고(안)

제4조(지원대상)

1.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2.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 수정(안)

제4조(지원대상)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업무 위임 대상 의견 반영(조례안제5조제2항3호 및 제10조 제2항)

○ 입법예고(안)

제5조 제2항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 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수정(안)

제5조 제2항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라.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안) 마련으로 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반영(조례 안 제9조)

○ 입법예고(안)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2.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 수정(안)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4.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3. 의견제출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전화 : 450-4216, FAX :450-4278,
 전자우편 : simjn66@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계(전화 450-42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며, 를 “한다”로 하며, 각1호, 2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 ②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③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④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제2항 제3호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간기구”를 비영리단체로 수정 한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제1호중 “식품비”를 “학교급식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4.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 제2항 “자원봉사 단체 등 민간기구”를 비영리단체로 수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학교급식” 이라 함은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제1호에 의한 급식 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2.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p> <p><신 설></p> <p>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p> <p>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u>품질인증 농산물</u></p>	<p><u>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u></p> <p>제2조(정의) ----- -----.</p> <p>1. ----- 이란 ----- ----- ----- ----- -----.</p> <p>2. “학교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p> <p>3. “학교급식지원센터”란 <u>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여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u></p> <p>4. ----- ----- ----- ----- ----- ----- -----.</p> <p>가. ----- ----- <u>우수관리 인증품</u> -----</p>	<p>1. “학교급식” 이란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나. ~ 마. (생략)

제3조(시의 임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지원대상중 셋째자녀 이상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식품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 식재료 구입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한다.

②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군산시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라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직접 지원한다.

나. ~ 마. (현행과 같음)

제3조(시의 임무) 시장-----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

한다.

- 1.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2. 초등학교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제5조(지원방법) ① -----

<후단 삭제>

② 지원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 등의 방식으로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

1. -----

2. -----

3. -----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비영리단체 등-----

4. 제3호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업자로서 시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

<신 설>

③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③ -----

<신 설>

④ 시장은 학교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신 설>

제5조의2(학교 무상급식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2.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

1 -----

2. -----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영양개선 및 식생활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4.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신 설>

제10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

제10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p>제10조 · 제11조 (생략)</p>	<p>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p> <p>③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지원센터는 우리 지역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하여야 한다.</p> <p>제11조 · 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p>	<p>----- ----- ----- -----</p> <p>② ----- ----- -- 비영리단체 등 ----- -----</p> <p>③ ----- ----- ----- -----</p> <p>④ ----- ----- -----</p>
-------------------------	--	--

군산시 고시 제2010 -132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새만금 제3, 4호 방조제 신규등록에 따른 지적도근점(64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군 산 시 장

번호	기준점번호	Bessel타원체		GRS80타원체			정표고(m)	소재지	관측일자	표지재질	
		평면직각좌표(m)	위도(도-분-초) 경도(도-분-초) 타원체고(m)	평면직각좌표(m)	투영원점						
1	6019	X	270001.68	35° 55' 45.68781"	X	370307.77	중부	11.290	새만금 3.4호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7640.81	126° 31' 53.11417"	Y	157713.36					
				34.676							
2	6020	X	269526.08	35° 55' 30.23250"	X	369832.17	중부	11.250	새만금 3.5호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7478.90	126° 31' 46.74729"	Y	157551.46					
				34.644							
3	6021	X	269322.02	35° 55' 23.60102"	X	369628.11	중부	11.240	새만금 3.6호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7409.39	126° 31' 44.01458"	Y	157481.97					
				34.635							
4	6022	X	269149.79	35° 55' 18.00410"	X	369455.88	중부	11.290	새만금 3.7호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7350.82	126° 31' 41.71118"	Y	157423.39					
				34.680							
5	6023	X	268946.12	35° 55' 11.38551"	X	396252.21	중부	11.270	새만금 3.8호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7281.52	126° 31' 38.98684"	Y	157354.10					
				34.663							
6	6024	X	268771.77	35° 55' 05.71953"	X	369077.86	중부	11.250	새만금 3.9호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7222.14	126° 31' 36.65148"	Y	157294.70					
				34.644							
7	6025	X	268559.47	35° 54' 58.82043"	X	368865.56	중부	11.260	새만금 3.10호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7149.86	126° 31' 33.80990"	Y	157222.43					
				34.650							
8	6026	X	268388.85	35° 54' 53.27546"	X	368694.93	중부	11.220	새만금 3.11호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7091.77	126° 31' 31.52653"	Y	157164.35					
				34.615							
9	6027	X	268180.37	35° 54' 46.50086"	X	368486.47	중부	11.210	새만금 3.12호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7020.80	126° 31' 28.73689"	Y	157093.39					
				34.599							

번호	기준점 번호	Bessel타원체		GRS80타원체			정표고 (m)	소재지	관측일자	표지 재질	
		평면직각좌표 (m)	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타원체고 (m)	평면직각좌표 (m)	투영 원점						
10	6028	X	268009.80	35° 54' 40.95748"	X	368315.89	중부	11.210	새만금 3.13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6962.68	126° 31' 26.45247"	Y	157035.28					
				34.599							
11	6029	X	267798.50	35° 54' 34.09082"	X	368104.59	중부	11.220	새만금 3.14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6890.75	126° 31' 23.62435"	Y	156963.33					
				34.614							
12	6030	X	267631.87	35° 54' 28.67606"	X	367937.97	중부	11.210	새만금 3.15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6833.98	126° 31' 21.39345"	Y	156906.58					
				34.607							
13	6031	X	267423.49	35° 54' 21.90371"	X	367729.58	중부	11.200	새만금 3.16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6763.04	126° 31' 18.60513"	Y	156835.64					
				34.592							
14	6032	X	267252.80	35° 54' 16.35663"	X	367558.89	중부	11.160	새만금 3.17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6704.95	126° 31' 16.32229"	Y	156777.56					
				34.550							
15	6033	X	267044.43	35° 54' 09.58522"	X	367350.53	중부	11.230	새만금 3.18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6634.02	126° 31' 13.53413"	Y	156706.62					
				34.620							
16	6034	X	266873.83	35° 54' 04.04106"	X	367179.93	중부	11.210	새만금 3.19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6575.92	126° 31' 11.25115"	Y	156648.53					
				34.603							
17	6035	X	266684.27	35° 53' 57.88029"	X	366990.35	중부	11.220	새만금 3.20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6511.44	126° 31' 08.71723"	Y	156584.05					
				34.612							
18	6036	X	266475.90	35° 53' 51.10900"	X	366781.99	중부	11.210	새만금 3.21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6440.48	126° 31' 05.92877"	Y	156513.10					
				34.608							
19	6037	X	266308.98	35° 53' 45.68428"	X	366615.07	중부	11.190	새만금 3.22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6383.67	126° 31' 03.69654"	Y	156456.29					
				34.588							
20	6038	X	266098.52	35° 53' 38.84483"	X	366404.61	중부	11.220	새만금 3.23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6312.91	126° 31' 00.91694"	Y	156385.54					
				34.611							
21	6039	X	265925.02	35° 53' 33.20776"	X	366231.11	중부	11.170	새만금 3.24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6262.01	126° 30' 58.92147"	Y	156334.64					
				34.565							
22	6040	X	265755.88	35° 53' 27.71092"	X	366061.97	중부	11.180	새만금 3.25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6205.24	126° 30' 56.69185"	Y	156277.88					
				34.578							

번호	기준점 번호	Bessel타원체		GRS80타원체			정표고 (m)	소재지	관측일자	표지 재질	
		평면직각좌표 (m)	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타원체고 (m)	평면직각좌표 (m)	투영 원점						
23	6041	X	265340.56	35° 53' 14.21208"	X	365646.65	중부	11.220	새만금 3.26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6054.04	126° 30' 50.74554"	Y	156126.68					
				34.615							
24	6042	X	264866.80	35° 52' 58.81507"	X	365172.88	중부	11.220	새만금 3.27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5892.72	126° 30' 44.40891"	Y	155965.38					
				34.616							
25	6043	X	264658.08	35° 52' 52.03068"	X	364964.12	중부	11.210	새만금 3.28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5821.64	126° 30' 41.61657"	Y	155894.29					
				34.606							
26	6044	X	264487.93	35° 52' 46.48469"	X	364793.47	중부	11.190	새만금 3.29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5763.53	126° 30' 39.33437"	Y	155836.19					
				34.586							
27	6045	X	264278.98	35° 52' 39.71107"	X	364585.05	중부	11.260	새만금 3.30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5692.57	126° 30' 36.54708"	Y	155765.23					
				34.652							
28	6046	X	264112.21	35° 52' 34.29300"	X	364418.34	중부	11.190	새만금 3.31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5635.79	126° 30' 34.31731"	Y	155708.46					
				34.581							
29	6047	X	263896.27	35° 52' 27.27360"	X	364202.35	중부	11.240	새만금 3.32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5562.28	126° 30' 31.43021"	Y	155634.95					
				34.638							
30	6048	X	263733.24	35° 52' 21.97532"	X	364039.32	중부	11.470	새만금 3.33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5506.80	126° 30' 29.25155"	Y	155579.48					
				34.868							
31	6049	X	263521.05	35° 52' 15.07914"	X	363827.13	중부	11.240	새만금 3.34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5434.54	126° 30' 26.41364"	Y	155507.21					
				34.637							
32	6050	X	263366.27	35° 52' 10.04885"	X	363672.37	중부	11.180	새만금 3.35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5378.32	126° 30' 24.20485"	Y	155451.02					
				34.573							
33	6051	X	263156.72	35° 52' 03.23907"	X	363462.81	중부	11.230	새만금 3.36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5311.06	126° 30' 21.56504"	Y	155383.74					
				34.621							
34	6052	X	262959.26	35° 51' 56.82159"	X	363265.35	중부	11.220	새만금 3.37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5243.32	126° 30' 18.90535"	Y	155316.01					
				34.618							

번호	기준점 번호	Bessel타원체		GRS80타원체			정표고 (m)	소재지	관측일자	표지 재질	
		평면직각좌표 (m)	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타원체고 (m)	평면직각좌표 (m)	투영 원점						
35	6053	X	262743.36	35° 51' 49.80463"	X	363049.45	중부	11.160	새만금 3.38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5169.90	126° 30' 16.02253"	Y	155242.59					
				34.553							
36	6054	X	262580.39	35° 51' 44.50807"	X	362886.47	중부	11.250	새만금 3.39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5114.45	126° 30' 13.84552"	Y	155187.14					
				34.642							
37	6055	X	262436.17	35° 51' 39.82136"	X	362742.27	중부	11.250	새만금 3.40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5065.33	126° 30' 11.91725"	Y	155138.03					
				34.644							
38	6056	X	262012.28	35° 51' 26.04448"	X	362318.37	중부	11.270	새만금 3.41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4921.00	126° 30' 06.25096"	Y	154993.70					
				34.663							
39	6057	X	261489.95	35° 51' 09.06931"	X	361796.04	중부	10.130	새만금 3.42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4746.77	126° 29' 59.41447"	Y	154819.49					
				33.522							
40	6058	X	261300.82	35° 51' 02.92476"	X	361606.91	중부	6.520	새만금 3.43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4695.05	126° 29' 57.39153"	Y	154767.76					
				29.912							
41	6059	X	261167.15	35° 50' 58.57309"	X	361473.24	중부	11.570	새만금 3.44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4605.62	126° 29' 53.85509"	Y	154678.34					
				34.970							
42	6060	X	260948.63	35° 50' 51.47208"	X	361254.72	중부	11.560	새만금 3.45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4538.12	126° 29' 51.21006"	Y	154610.84					
				34.959							
43	6061	X	260695.66	35° 50' 43.26755"	X	361001.76	중부	5.990	새만금 3.46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4553.82	126° 29' 51.88806"	Y	154626.56					
				29.381							
44	6062	X	260494.56	35° 50' 36.73622"	X	360800.65	중부	6.290	새만금 3.47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4514.14	126° 29' 50.34829"	Y	154586.88					
				29.682							
45	6063	X	260339.90	35° 50' 31.70038"	X	360645.99	중부	5.770	새만금 3.48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4405.95	126° 29' 46.06873"	Y	154478.69					
				29.169							
46	6064	X	260180.40	35° 50' 26.49994"	X	360486.49	중부	5.600	새만금 3.49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4252.67	126° 29' 39.99421"	Y	154325.41					
				28.989							
47	6065	X	260054.66	35° 50' 22.40189"	X	360360.76	중부	5.480	새만금 3.50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4140.31	126° 29' 35.54321"	Y	154213.06					
				28.868							

번호	기준점 번호	Bessel타원체		GRS80타원체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측일자	표지 재질	
		평면직각좌표 (m)	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타원체고 (m)	평면직각좌표 (m)							
48	6066	X	259907.03	35° 50' 17.62066"	X	360214.00	중부	13.130	새만금 3.51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4025.53	126° 29' 30.89219"	Y	154095.57					
				36.522							
49	6067	X	259786.31	35° 50' 13.65139"	X	360092.39	중부	8.850	새만금 3.52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3882.25	126° 29' 25.31658"	Y	153955.00					
				32.239							
50	6068	X	259636.78	35° 50' 08.78651"	X	359942.86	중부	8.500	새만금 3.53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3802.13	126° 29' 22.15532"	Y	153874.88					
				31.890							
51	6069	X	259501.78	35° 50' 04.38814"	X	359807.86	중부	8.600	새만금 3.54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3694.36	126° 29' 17.88969"	Y	153767.11					
				31.988							
52	6070	X	259328.53	35° 49' 58.74408"	X	359634.61	중부	8.560	새만금 3.55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3558.28	126° 29' 12.50453"	Y	153631.05					
				31.941							
53	6071	X	259188.68	35° 49' 54.18819"	X	359494.76	중부	8.600	새만금 3.56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3448.41	126° 29' 08.15624"	Y	153521.17					
				31.979							
54	6072	X	259006.55	35° 49' 48.25460"	X	359312.63	중부	8.590	새만금 3.57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3305.29	126° 29' 02.49258"	Y	153378.06					
				31.972							
55	6073	X	258873.12	35° 49' 43.90751"	X	359179.19	중부	8.590	새만금 3.58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3200.49	126° 28' 58.34568"	Y	153273.26					
				31.972							
56	6074	X	258694.44	35° 49' 38.08632"	X	359000.51	중부	8.580	새만금 3.59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3060.14	126° 28' 52.79174"	Y	153132.91					
				31.955							
57	6075	X	258557.82	35° 49' 33.63518"	X	358863.89	중부	8.590	새만금 3.60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2952.81	126° 28' 48.54502"	Y	153025.59					
				31.963							
58	6076	X	258387.72	35° 49' 28.09359"	X	358693.79	중부	8.570	새만금 3.61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2819.22	126° 28' 43.25913"	Y	152892.00					
				31.946							
59	6077	X	258239.89	35° 49' 23.27919"	X	358545.96	중부	8.330	새만금 3.62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2714.56	126° 28' 39.12130"	Y	152787.34					
				31.700							
60	6078	X	258047.14	35° 49' 17.01282"	X	358353.21	중부	10.010	새만금 3.63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2640.07	126° 28' 36.19519"	Y	152712.86					
				33.378							

번호	기준점 번호	Bessel타원체		GRS80타원체			정표고 (m)	소재지	관측일자	표지 재질	
		평면직각좌표 (m)	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타원체고 (m)	평면직각좌표 (m)	투영 원점						
61	6079	X	257906.29	35° 49' 12.44901"	X	358212.36	중부	14.960	새만금 3.64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2675.70	126° 28' 37.64452"	Y	152748.49					
				38.330							
62	6080	X	257747.82	35° 49' 07.30723"	X	358053.89	중부	25.530	새만금 3.65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2672.21	126° 28' 37.53935"	Y	152745.00					
				48.906							
63	6081	X	257529.01	35° 49' 00.22980"	X	357835.09	중부	10.780	새만금 3.66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2796.51	126° 28' 42.53727"	Y	152869.30					
				34.159							
64	6082	X	257228.29	35° 48' 50.51347"	X	357534.37	중부	10.770	새만금 3.67호 방조제내	2010.1.20	철재
		Y	153029.82	126° 28' 51.89450"	Y	153102.62					
				34.146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063-450-4261)

군산시 공고 제2010-1834호

공 고

1. 군산시 삼학2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동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01일

군 산 시 장

가. 정비구역 지정

①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신설	군산시 삼학2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군산시 삼학동 884-2번지외 337필지	31,954	

② 사업시행계획서 주요내용

-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 (나)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 (라) 기타 시행규정(정비사업명칭, 시행년도 및 시행자, 국·공유지조서 등)

③ 공람 공고기간 : 2010.12.01 ~ 2010.12.14(공고일로부터 14일간)

④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군산시청 건축과

⑤ 관련도서 열람 : 군산시청 건축과 비치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450-4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